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생 오리엔테이션

<<<



목차

- Ⅰ 비트캠프 소개
- π 교육과정 안내
- ᇳ ၙ학사규정 안내
- ⅳ 훈련생 주의사항



www.bitcamp.co.kr



비트캠프 소개



1.1 비트캠프 소개 (교육철학)



- "기술은 나눌수록 커진다"
-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사회에 환원한다"

1990년 설립 이후 변하지 않는 목표와 철학



1.2 비트캠프 소개 (교육목표)

프로젝트 중심교육

공모전

비트 프로젝트는 매년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있음 - 앱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비트캠프



Q

* 유튜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 프로젝트의 수준 높은 결과물은 재능기부를 통해 활용됨양준혁 야구재단의 선수관리 프로

재능기부

그램









스타트업

비트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수료생 이 창업 진행

- <아이디어 하우머치> 방송을 통해 4.2억 투자유치



1.3 비트캠프 소개 (센터현황)





교육과정 안내



2.1 교육과정 안내 (기본사항)

■ 훈련과정

- 과 정 명 : 디지털컨버전스 기반 UI/UX Front 전문 개발자 양성과정 B

- 교육기간 : 2020. 09. 01 ~ 2021. 02. 15 (112일)

- 교육강사 : 이문희 강사님

- 강 의 실 : 비트캠프 서초본원 301호

■ 훈련시간

■ 훈련 담당자

- 정규수업: 09:30 ~ 18:10 - 매 니 저:최 서 윤

- 점심시간 : 13:30 ~ 14:10

- 스터디: 18:20 ~ 21:00 (금요일 20:00)

(1개월 의무 스터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체계화 한 것

학력중심 사회에서 실제 산업현장과 기업에서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하는 현실, 대학 전공과의 불일치,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증가 등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비트캠프와 함께! 뛰어난 IT 직무능력을 가진 우수한 개발자로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3 학사규정 안내



3.1 학사규정 안내 (출결)

학사규정 (출결)

- 1. 강의시작 5분 전에 강의실 입실완료
- 2. 교육시간 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각처리
- 3. 교육시간 종료 전에 귀가하는 경우 조퇴처리
 -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석으로 처리
- 4. 지각/조퇴/외출로 인해 교육시간 50% 미만일 경우 결석처리
- 5. 출결체크는 입실 및 퇴실 시 반드시 진행 (지각/조퇴 포함)
- 6. 입/퇴실 미체크 등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경우는 결석처리
- 7.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적(퇴소) 조치
 - 2회 이상 무단외출
 -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속 결석
 - 정당한 사유 없이 단위 개월 내 10일 이상 결석
 - 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3.1 학사규정 안내 (출결)

학사규정 (출결)

1. 제적(퇴소) 조치 규정

- 훈련교사 및 연수담당자에게 불손한 언행/행동으로 교육진행에 차질
- 고의적 기물파손 및 불법 S/W설치 및 삭제
- 특별한 사유 없이 근태가 나쁘고 훈련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원활한 교육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반복

2. 예외적 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

구분	대상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훈련•시험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된 국가시험 (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면접)	소요일수	
	정부, 지자체, 공단에서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결혼	본인		
출산	배우자	5	



3.2 학사규정 안내 (성적)

학사규정 (성적)

- 연수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연수생의 연수과정에 대해 정기적 평가
- 2. 각 과목의 평점은 시험성적(필기/실기), REPORT, 출석으로 합산
- 3.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
- 4. 학사경고
 - 3회 이상 무단으로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적
 - 과목평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경고 1회, 경고가 3회 이상 시 제적



3.3 학사규정 안내 (수당)

학사규정 (수당)

1. 단위기간 기준으로 출석률 80% 이상의 경우 지급

1회차 - 9/1~9/30 4회차 - 12/1~12/31

2회차 - 10/1~10/31 5회차 - 1/1~1/31

3회차 - 11/1~11/30 6회차 - 2/1~2/28

- 2. 단위기간이 월력상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일수만큼 일할 계산후 지급
- 3. 단위기간별 교통비 5만원+식비 6만6천원은 공통적으로 지급
- 4. 실업급여/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 목적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에는 훈련수당 미지급



3.4 학사규정 안내 (수료)

학사규정 (수료)

1. 수료

- 전 연수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한 연수생에게 수료증 교부
- 팀 프로젝트 참여 후 발표회 참여자에게 수료증 교부

2. 중도탈락

-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기준의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총 연수일수의 100분의 20일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 기타 학사규정 위반 시 (부정출결, 명의도용, 근로소득 발생 등)

3. 조기취업

- 교육과정 종료 전 취업할 경우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제출 필요)



수 훈련생 주의사항



4.1 훈련생 주의사항 (출결)

※ 출결 방법: 지문, 비콘, QR코드로 입/퇴실 출결체크

1) 지각: 09:40 이후에 입실한 경우

2) 조퇴 : 18:00 이전에 퇴실한 경우



지각, 조퇴, 외출 3회 = 1일 결석

3) **50/100 미만 출석은 결석**으로 처리 – 주의!!

지각: 09:41 ~ / 조퇴: ~ 17:59 (출결체크 시간 기준으로 처리)

- 4) **입실, 퇴실 미 체크는 결석** 반드시 체크 필수!!
- ※ 매일 입·퇴실 시마다 출결 진행 후 HRD-Net 및 출결관리 App에서 확인
- ※ 출결체크를 하지 않거나 입실, 퇴실 중 1회만 한 경우 결석 처리
- ※ 비콘으로 출결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매니저에게 반드시 전달 (전체 오류 외에는 증빙 방법이 없어 출석인정이 어려움)
- 5) 공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각, 조퇴, 결석 시 반드시 담당 매니저에게 연락



4.1 훈련생 주의사항 (출결 - 공결)

	사유	인정일수	제출서류	
1	예비군, 동원훈련	소요일수	훈련 필증	
2	입사면접	소요일수	면접확인서 외	
3	자격, 면허시험	소요일수	수험표	
4	결혼(본인)	5일	청첩장	
5	부모상	5일		
	배우자상		사망진단서	
	(외)조부모상	2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상			
	형제자매상	1일		
6	병 결	단위기간의 10% 미만	진료확인서	



4.2 훈련생 주의사항 (교육 시 준수사항)

- 1. 교육 시작 후 강의장 내에서 이석(외출, 조퇴) 시 반드시 담당 매니저와 반드시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 2. 교육 진행 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ex) 강의장 내에서 전화 받는 행위 (가급적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SNS(카카오톡) 및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행위

음주 후 교육에 참여하는 행위

교육 중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교육 중 계속적으로 좌석을 이탈하는 행위

3. 본 건물은 금연 건물이므로 건물 내 흡연을 금합니다.



4.3 훈련생 주의사항 (교육생 안전관리)

- 1. 화재 시 안전수칙
 - 강의장 내 게재된 안전대피요령 내용 확인
 - 각 층의 승강기 및 비상계단(탈출구) 확인
 - 간단한 화재의 경우 강의장 및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사용
 - 관리실로 문의하거나 119 신고
- 2.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 1)응급상황을 인식한다.
 - 2)도움을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 3)부상자를 평가한다.
 - 4)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5)필요 시 119에 연락한다.
- 3. 병원치료 필요 시 담당 매니저에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3 훈련생 주의사항 (교육생 안전관리)





4.4 훈련생 주의사항 (성희롱 예방관리)

피해자가 되었을 때,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증거자료 확보, 관리자와 상담요청









피해자의주관적사정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

사회 통념의 고려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사안별결정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기타

행위의 반복성여부, 대상의 특정 여부, 거부의사의 표시여부

성희롱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하는 것

- 1)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
- 3)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영상, 출판물 등 보여주는 것, 특정 신체부위를 고위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



감사합니다.

